

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개정이유

-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·도내에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하지 않고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의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제조정하고자 하는것임.

☐ 주요골자

-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·도내(시·군·자치구포함)소요조회를 할 경우
- 현행,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던것을 1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(안 제 17조)

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2호중 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가격기준)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”를
“물품취득가격(장부가가격기준)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
재활용이 가능한 물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17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동일 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와 정부 각 부처, 타 특별시·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. 동일 광역시·도(시·군·자치구 포함)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	제17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--- 물품취득 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